정보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용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보호 수단으로서의 정보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정보는 보호 수단으로 간주된다. '정보'라는 용어는 협약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1]

협약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

1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2조 2항, 2003.

다."[2] 교육, 정보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은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존중의 태도를 고취하고 유산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일반대중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수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젊은층에게 무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행 중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정보와 인식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인식제고나 교육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자료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와 경험의 교류는 협약에서 국제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3] 따라서 이러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 활성화는 한국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4]의 주요 활동이 되었다.

협약은 또한 국제원조 요청의 조건으로써 그러한 모든 국제원조 요청에 수반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 따라서 국제원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국가·소지역·지역·국제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노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요소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수집과 저장, 보급을 강조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통해 아는 것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인식도 형성된다. 일단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게 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처럼 정보는 무형문화유산에

2_ 동 협약, 14조 a (1)항, 2003.

3_ 동 협약, 19조 1항, 2003.

4_ 박성용,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2011년 10월 5~6일, 자카르타, 무형유산 보호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역 세미나 발표문 슬라이드 7번

5_ 동 협약, 22조 1항과 23조 3항, 2003.

대한 인식제고와 보호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는 협약 당사국의 정부 관료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NGO와 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필요하다. 유네스코가 영어와 불어로 발행하며 매년 갱신되는 무형문화유산 기본문서(Basic Texts of ICH)가 있는데, 이 문서에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위원회 절차규정, 협약 운영지침 등이 포함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본문서를 지속적으로 널리 배포해 왔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종사자라면 누구라도 시간을 들여 이 문서들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필요에 의해 국제법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협약의 내용을 언제나 쉽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나 불어가 공용어가 아닌 국가는 자국의 공식 언어나 지역 언어로 이 문서들을 번역하여 사람들이 토착어로 된 문서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협약 당사국들은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2003년 협약 비준의 필수 요건으로 최소한 이 협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했다.[6]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수는 결코 한 가지 방식, 소위 무형문화유산 사무국에서 각 국가·소지역·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협약의 내용을 연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지니거나 연행 및 전수 방법을 체득하는 전승자들도 있다.[7] 각주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2011년 10월 14일 멕시코 오악사카에서 실버스 아나미(Silverse Anami)의 강연을 듣고 난 후 필자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형문화유산을 연행하고 보호하며 전수해 온 아프리카의 토착 공동체로부터 이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서양의 학문적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에 머물면서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여러 측면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연구자들은 현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전문적 지식을 기록하고(물론 지적재산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평양 도서국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의 사례는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무형유산

6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비준 당시 2007년 7월 대통령령 78호에 첨부(출처: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7_ 실버스 아나미, 2011년 10월 14일 멕시코 오악사카에서 열렸던 대표목록에 등재된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보호 과제에 대한 강연

센터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정리하여 뉴스레터 꾸리에와 웹사이트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Ⅲ.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한 조치

본 쟁점에 대한 필자의 발표는 아태무형유산센터[8]가 구축한 방식[9]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1. 현지조사 및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수집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현지조사는 다양한 주체들이 수행해왔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연구개발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e)도 그 중 하나이다.[10] 문화관광부에는 역사·전통가치보존국(BPSNT)[11] 산하 11개 부서가 있고 각 부서는 2~3개의 지역을 관할한다. 여기서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현지조사와 정보수집을 수행한다.[12]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문화국(Culture Services in Districts and Municipalities)은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한다. 2010년 문화연구개발센터는 『과학적 관점에서 본 크리스』[13]를 출판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 전통무형문화유산인 크리스 관련 학술논문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12명의 학자들이 저술에 참여했다.

NGO와 개인들도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에 참여한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 국립와양사무국(SENA WANGI)이 설립한 인도네시아 와양데이터베이스센터가 있다. 이 센터

8_ 박성용, 앞의 발표문

9_ 박성용, 앞의 발표문

10_ 2011년 10월 17일 기준, 문화관광부는 관광창의산업부와 교육문화부로 구조 개편되었다. 장관급 이하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규정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11_ Badan Pelestarian Sejarah dan Nilai Tradisional

12_ 그 예로, 발리 전통무용학교, 전승자, 서면연구목록(2009년 발리 누사 텡가라 BPSNT 에 의해 최신 정보로 갱신)과 아태지역문화유산목록(반다아체 BPSNT가 갱신)이 있다.

13_ Pusat Penelitan dan Pengembangan Kebudayaan, Keris dan Segi Ilmiah, Haryono Haryoguritno (ed.), Jakarta, 2010

는 1999년부터 60종이 넘는 인도네시아 와양 인형극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디지털과 오디오, 비디오, 활자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다. 센터는 웹사이트[14]를 운영하며 와양 인형극에 대한 6권 분량의 백과사전과 와양 인물에 대한 백과사전을 간행했다. 인도네시아 국립크리스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크리스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작성 활동을 펴 왔으며 발행지인 크리스(Keris)와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다마르타지재단 등 NGO 역시 수십 년간 크리스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편찬해 왔으며, 이 자료를 소개하는 다수의 학술논문 및 저서를 발표하고 있다. 본 발표문의 뒷부분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수집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인도네시아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2009~2010년에 시작한 현지조사와 무형문화유산 자료 수집에 적극 협력해 왔다. 이러한 조사는 국가보고서로 만들어져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보관 및 배포하고 있다.

2.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문화관광부[15] 산하 문화가치예술영화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ultural Values, Arts and Film)은 유네스코자카르타사무소와의 협력 하에 2009년 8월 19~20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16]을 2개 국어로 출판했다. 이 책은 다음의 17개 데이터 항목이 포함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목록작성 체계를 다루고 있다.

(1) 목록작성 코드(파일코드 번호는 담당부서에서 기입)
(2) (가) 문화유산 종목명 (나) 다른 명칭이 있다면 기입
(3) 문화유산 종목 기록자 이름
(4) 문화유산 종목 기록 장소 및 날짜

14_ www.wayang-indonesia.com

15_ 2011년 10월 17일 기준, (구)문화관광부는 관광창의산업부와 문화교육부로 구조개편되었으며, 이 부서 내에 문화차장을 덧붙인다. 이러한 하부구조로의 개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6_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가치 · 예술 · 영화총국이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와의 협력하에 작성한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기록, 자카르타, 2009년

(5) 목록작성 동의서 작성자 (가) 공동체/조직/협회/기관 (나) 사회집단 또는 (다) 개인
(6) 해당 문화유산 종목의 간략한 역사
(7) 문화유산 종목의 책임 공동체/조직/협회/기관/전통보존회[17]/사회집단/개인
(8) 문화유산 전승자/보유자 : 문화유산 종목과 관련해 지식과 기술을 보유자의 이름과 나이를 기입
(9) 문화유산 종목의 전승 장소(주요 장소 및 기타 장소)
(10) 문화유산 종목의 카테고리(무형문화유산 5개 분야 가운데 1분야 이상 표시)
(11) 현재 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상세 개요
(12) 문화유산 종목의 현황(1곳에 표시)
(13) 문화유산 종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활동 제시
(14) 문화유산 보유자/전승자, 공동체, 개인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 종목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모범 사례 간략하게 설명)
(15) 별첨 문서
(16) 참조 사항
(17) *특히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종목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가 기입해야 할 내용[18]
(18) 각 문화유산 종목의 목록은 최소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 책자는 그동안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참고 도서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이 책의 영어판은 유네스코자카르타사무소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19]

3. 무형문화유산 지적재산권 보호의 증진

지적재산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20] 그러나 협약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17_ 전통보존회(Paguyuban)는 특히 자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에서 만든 전통단체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존재한다.

18_ 문화가치 · 예술 · 영화총국, 위의 기록, 3.2

19_ http://portal.unesco.org/geography/en/ev.php-URL_ID=8136&URL_DO=DO_TOPIC&URL_SECTION =201.html; http://www.unesco.or.id/publication/CLT_Publications_2009.pdf.

20_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WIPO는 이 사안을 두고 광범위하게 토론해 왔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창시자를 확인할 수 없고 무형문화유산 공동체가 신성시하며 간직해 온 비밀스러운 지식의 경우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0년 10월 20일에 서울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 전문가들은 이 쟁점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필자도 그 자리를 빌어 발표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주제는 2011년 10월 4~5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적 표현물의 다양성에 관한 지역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루었다. 이 세션에서는 3명의 연사,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21]과 인도네시아대학 아구스 사르조노(Agus Sardjono) 교수[22], 오사카시립대학의 미치 토미오카(Michi Tomioka) 교수[23]가 발표를 했다. 일반적으로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4.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복원과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무형문화유산의 다섯 가지 영역에 속하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방식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자료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의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활용 가능한 방법에는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를 손꼽을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복원의 사례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위치한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도서관(Kepustakaan Budaya) 주도로 진행 중인, 문화유산 관련 전집의 부식 및 노후화 방지 노력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목록작성은 하드카피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를 기록한다. 무형문화유산 정보 관련 디지털 자료의 경우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1_ 박성용, '무형유산 보호 및 정보 공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쟁점,' 2011년 10월 5~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무형유산 보호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역 세미나 발표 보고서.

22_ 아구스 사르조노, '지적재산권과 전통예술 사이,' 동 작가의 동일 제목의 도서에 기반하여 작성됨.

23_ 미치 토미오카, '예술적 작품의 원천에 대한 이해,' 2011년 10월 5~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역 세미나 발표 보고서.

5. 무형문화유산 증진을 위한 출판과 홍보

무형문화유산 보호 증진과 인식제고라는 우리의 목표는 그동안 수집하고 보관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폐쇄된 아카이브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정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정보는 홍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전자자료 또는 인쇄물의 배포를 통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는 정기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증진시키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6.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 체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제안된 제도적 보호조치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채택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재정적 조치 ;

-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를 장려하고, 이러한 유산의 시연이나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해당 유산의 전수를 장려
- 무형문화유산의 특정한 면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
-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 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24]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가치예술영화총국과 문화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연구개발국을 위한 센터는 (부(府)로 개편된 후에도)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에 관여하는 주요 관청으로서 앞서 언급한 활동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문화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적 보호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주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체계 구축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4_ 동 협약, 13조, 2003.

Ⅳ.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저장 및 보급에 잠재된 장애 요인

필자는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과 저장, 보급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목격했다. 이러한 '문제 사례'를 공유해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1) 현지답사나 전문가 혹은 전승자와의 면담 없이 사무실에 앉아 참고도서와 인터넷만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모으는 행위

무형문화유산의 정신은 학술도서나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시연하는 공동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보고 듣고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느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껴 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효과적인 공동체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고 체험하기 위해 아태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공동체와 교류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 무형문화유산 중 전통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25] 또 다른 사례로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연구발전센터의 당시 소장이던 해리 왈루요(Harry Waluyo)를 들 수 있다. 2009~2011년, 그는 인도네시아 최북서단에 자리한 아체 주에서부터 극동의 파푸아까지 전역을 두루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경험을 관련 공동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며 지역 연구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재연해 시연하도록 훈련시켰다. 또한 그는 일부 무형문화유산(인도네시아 크리스, 파푸아 수공예 노겐, 앙클룽 등)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다.[26]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단순한 학술 활동이 아니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집된 정보는 향후 보호활동의 기반으로 이용되고 이 과정에서 각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이다.[27] 따라서 방문은 무형문화유산 세미나와 회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결과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는 학문적 차원이나 관점에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25_ 박성용, 2011년 10월 6일 자카르타에서의 인터뷰.

26_ 해리 왈루요, 2011년 10월 5일 자카르타에서의 인터뷰.

27_ 동 협약, 11조 나항, 2003.

아니라, 현지에서 본인들이 직접 무형문화유산을 보고 듣고 느낄 기회를 얻어야 하고, 공동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최신 무형문화유산 정보로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무형문화유산은 수집된 화석이라기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무형문화유산 정보가 정기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금방 구식이 되고 심지어 타당성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8]

3) 디지털 자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

디지털 자료는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29] 디지털 시스템이 와해되기도 하고 수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정보와 데이터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오염되기도 한다. 최악의 사례로 문화통합정보시스템(SIKT)[30] 사건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당시 교육문화부의 문화부청장이던 에디 세티아와티(Edy Sediawati) 박사가 구축한 SIKT는 한순간에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필자가 알기로는 정보에 대한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2010년 해리 왈루요(Harry Waluyo) 박사는 역사·전통가치보존국(BPSN) 요그야카르타 지국의 한 컴퓨터에서 SIKT 데이터의 일부를 발견했다. 그 이후 데이터의 백업 저장이 상례화되었고 중요한 데이터는 문서로 보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작업의 소실을 방지하고 있다.

4)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당사자의 참여없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집한 무형문화유산 정보는 그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점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지속적인 보호 노력의 토대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간행물을 고가에 독점 발행하고 구입 여력이 있는 극히 제한된 소비층에게만 배포

28_ 동 협약, 12조 1항, 2003.

29_ Kono, Toshiyuki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sentia Publishing, Antwerp, 2009. Kono,.

30_ Sistem Informasi Kebudayaan Terpadu. Directorate-General of Culture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Education, coordinated by Prof. Dr. Edy Sediawati, (then) Director-General of Culture.

일반대중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생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널리 전파하는 것(지적재산권 문제는 염두에 둔다)이 이상적이다.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무형문화유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일반대중의 인식도 제고된다.

V.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정보 활용

앞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관한 도서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당사자들이 있다. 각자의 목적과 얻는 혜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31]

정부

- 인도네시아 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게 될 것이다.
-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계획 입안 및 정책 마련을 가속화할 것이다.
-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은 인도네시아 문화유산의 발전양상에 대한 정기보고서의 작성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이다.

학계

- 연구수행 및 과학발전과 대학 교과과정의 교재를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된다.

업계

- 문화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독창적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 독창적이면서 인도네시아 고유의 상품을 마케팅할 수 있다.
- 독창적인 상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31_ 문화가치 · 예술 · 영화총국, 앞의 글

일반대중

- 인도네시아에 현존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 고유문화의 독창성에 세계적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
- 공동체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맥락에서 보면, 무형문화유산 정보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아시아·태평양)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무형문화유산 지역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32] 아태지역에 있는 이 분야 관계자들을 초대해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Ⅵ.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및 보급에 있어 네트워킹의 주요 역할

개인이 넓은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고, 그 결과의 범위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은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수집과 보급 단계에서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합의를 토대로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한 형태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 웹2.0 플랫폼을 이용하면 승인된 일반회원이 온라인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수정·갱신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Wikipedia©와 유사).[33] 포괄적인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담고 있는 웹2.0 웹사이트로 wahana-budaya-indonesia.com[34]을 들 수 있다. 이 사

32_ 2009년 8월 19~20일에 개최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목록작성'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2011년 10월 5~6일에 개최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역 세미나

33_ 해리 왈루요, '인도네시아 문화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로서 메타데이터', 2009년 8월 19~20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목록작성 심포지엄 및 워크숍에 발표.

34_ http://www.markosweb.com/www/wahana-budaya-indonesia.com/.

이트는 웨스트자바 지역 반둥 시 출신의 젊은 IT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문화관광부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체계는 메타데이터 체계와 웹2.0 플랫폼을 제안한다. 메타데이터 개념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와양 데이터베이스센터(PDWI) 는 이미 인도네시아 와양(인형극)[35] 과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정보는 2009년부터 수집된 것이다. 와양 인형극에 대한 정보를 무(無)에서 시작해 수집하는 것보다 메타데이터 체계와 협약을 맺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 정보는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와 정부, 비정부기구, 개별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게 보급될 수 있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에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능한 포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Ⅶ. 지역·소지역·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 보급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제안조치들과 관련된 찬반양상

무형문화유산 정보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지역·소지역·국가 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활동을 둘러싼 찬반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적 차원, 특히 아태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중앙집중적인 무형문화유산 정보 및 보호 노력과는 대조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당사국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동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36]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몇 가지 협력 활동의 사례를 소개한다.

양자 간 협력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목록작성, 등재신청 및 등재 유산 보호사례에 관한 정보공유 워크숍.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유산국과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연구개발센터 간에 양자간 협력활동이 이루어졌다. 2010년 9월 6일 베트남 문화체육관

35_ 인도네시아 와양.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 2008년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36_ 동 협약, 19조 2항, 2003.

광부의 문화유산국 사무실에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3명의 연사가 참석했다. 아태무형유산센터 또한 아태지역의 다수 국가들과 무형문화유산 양자간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소지역 협력 : 아세안인형극협회(ASEAN Puppetry Association, APA) 설립.
다양한 형태의 인형극은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 아세안 전체 10개 회원국의 인형극 공동체 대표자들이 소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인 인형극을 보호할 목적 하에 2006년 12월 1일 자카르타에서 소지역 차원의 비정부단체를 설립했다. 2011년 10월 1~3일 일정으로 제4회 APA 연례회의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APA 창립에 참여했던 필자는 최근 개최된 APA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지역 간 협력 :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설립.
한국정부가 설립한 이 기관은 현재 정보 및 네트워킹에 중점을 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승인받았다. 중국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는 훈련에, 일본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연구센터(IRCI)는 무형문화유산 연구에 초점을 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이다.

국제적 협력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연례회의와 협약 당사국 총회가 격년으로 개최.
인도네시아는 2013년 세계문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무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처럼 무형문화유산 정보 및 보호노력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은 비용과 인력자원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역·소지역·국가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은 무형문화유산 사무국의 재정 및 인력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보급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보호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사무국의 관심 사항은 2003년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정보 및 관행의 기준이 항상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유네스코사무국은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무형문화유산 교육자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해 오고 있다.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은 한 걸음 나아가 각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교육워크숍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발행물

과 문서,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유념하며, 소지역·지역 차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를 활용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Ⅷ. 결론

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국가·소지역·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한 부분으로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및 저장, 보급을 중요시 한다.
2.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정보이다.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통해 해당 유산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처럼 정보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호활동의 중요한 시발점이다.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방식일 수 없고, 따라서 연구자들은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3. 아태무형유산센터가 확립한 방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및 공유와 관련된 활동이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체계로, 유네스코자카르타사무소와의 협력 하에 2개 국어로 작성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었다.
4.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수집, 저장, 보급과 관련하여 수많은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다양한 '문제사례'에 주목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수집 및 저장, 보급을 최적화해야 한다.
5. 무형문화유산 정보는 정부, 학계, 비정부기구, 개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체계의 설계에도 이 점이 잘 반영되어 있다.
6. 다양한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보급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며, 그 결과는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보급에 있어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이다.
7.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과 보급에 대한 소지역·지역 차원에서의 접근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향후 정보를 활용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강화는 소지역·지역차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발행물과 문서,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사무국이 정한 표준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